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6	19	1993. 9. 2.	종재김영모

의안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
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5조

제외취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위축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
양도성예금증서(CD)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최저발행금액을 하향조정하고
부대조건(전기와 같이)의결할 것을 제외함

1391

<참 고 사 령>

제외관계 법규조항 반례

「한국은행법」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영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「한국은행법」 제66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 부 록 >

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1.~2. (생 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3. 최저발행금액 : <u>5천만원</u>	3. 최저발행금액 : <u>3천만원</u>
4.~7. (생 략)	4.~7. (현행과 같음)
8. 실시일자: <u>1992. 12. 19.</u>	8. 실시일자: <u>1993. 9. 3.</u>

1393